

2021 전산회계운용사 학습용

자격시험의 모든 것
<http://license.duzontv.com>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모의고사

제2회 모의고사 문제 및 풀이 해설

※ 참고: 본 학습서는 2015년 출제 당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2015년 세법을 기준으로 해설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2021년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세법을 병기하였습니다.

〈제1과목〉 재무회계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은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회계기간 후에는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② 실무에서는 주문 후 아직 인도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한 부채와 같이 동일한 비율로 미이행된 계약상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③ 수익의 인식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 ④ 수익은 발생한 원가와 특정 비용항목의 처리간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2. 다음 중 회계순환과정의 순서로 올바르게 구성된 것은? 단, 시산표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분개 - 전기 - 재무제표의 작성 - 기말수정분개
- ② 전기 - 분개 - 재무제표의 작성 - 기말수정분개
- ③ 분개 - 전기 - 기말수정분개 - 재무제표의 작성
- ④ 전기 - 분개 - 기말수정분개 - 재무제표의 작성

3. 다음 중 결산시 수정분개처리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10월 1일의 1년분 보험지급액은 ₩120,000이고,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 ① 10월 1일 지급액을 모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차) 보험료 ₩30,000 (대) 선급보험료 ₩30,000”의 분개를 하여야 한다.
- ② 10월 1일 지급액을 모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차) 선급보험료 ₩30,000 (대) 보험료 ₩30,000”의 분개를 하여야 한다.
- ③ 10월 1일 지급액을 모두 자산으로 계상하였다면,
“(차) 보험료 ₩30,000 (대) 선급보험료 ₩30,000”의 분개를 하여야 한다.
- ④ 10월 1일 지급액을 모두 자산으로 계상하였다면,
“(차) 선급보험료 ₩90,000 (대) 보험료 ₩90,000”의 분개를 하여야 한다.

4. 다음 중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 ① 퇴직급여부채
- ② 유동성장기부채
- ③ 만기가 2년 남은 신주인수권부사채
- ④ 2년의 품질보증 기간이 남은 제품에 대한 제품보증충당부채

9.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채권 기말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대손상각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60,000
- ② ₩70,000
- ③ ₩80,000
- ④ ₩90,000

가. 당기현금 매출액	₩50,000
나. 매출총이익	₩90,000
다. 기초 매출채권	₩80,000
라. 매출채권 회수액	₩260,000
마. 기초 상품재고	₩120,000
바. 당기상품매입액	₩200,000
사. 기말 상품재고	₩110,000

10. 다음 예수금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예수금은 그 성격상 자산에 해당한다.
- ② 부가가치세나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등이 예수금을 발생시키는 항목이다.
- ③ 제3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을 기업이 미리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예수금이 발생한다.
- ④ 종업원이 실제 지급받는 급여는 명목상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예수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11. (주)한국은 재고자산에 대한 원가
흐름은 총평균법을 가정하고 있다.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할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2013년 4월의 평균단가는 얼마인가?

- ① ₩1,300 ② ₩1,500
- ③ ₩1,600 ④ ₩1,800

		수 량	단 가	금 액
4월 1일	기초재고	20	₩700	₩14,000
4월10일	매 입	40	₩900	₩36,000
4월15일	매 출	50	-	-
4월20일	매 입	70	₩1,700	₩119,000
	기말재고	80		

12. (주)상공은 2013년 1월 1일에 시작한 본사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출을 하였다. 이 회사는 일반차입금 ₩1,000,000(연이자율 10%, 3년 만기)을 2013년 1월 1일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본사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한 특정차입금 ₩400,000(연이자율 12%, 1년 만기)을 2013년 4월 1일에 차입하여 당해 공사에 지출하였다. 일반차입금의 금융원가 중에서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 ① ₩30,000 ② ₩40,000
- ③ ₩50,000 ④ ₩70,000

가. 1월 1일 :	계약금	₩500,000
나. 7월 1일 :	중도금	₩400,000
다. 12월 31일	잔 금	₩200,000

13.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개발 중인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한 경우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당기손실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③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차입한 장기차입금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이라면 개발중인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 ④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과 라이선스의 상각비는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14. 다음 중 사채의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액면금액의 현재가치 + 이자 지급액의 현재가치
② 액면금액 + 이자 지급액의 현재가치
③ 액면금액 + 이자 지급액
④ 액면금액의 현재가치

15. 2013년 중에 (주)서울은 다음의 자기주식 거래를 하였다. 기말에 자기주식 거래로 인하여 자본에 계상될 자기주식처분이익 증가분은 얼마인가?

2013년 3월 1일: 자기주식 1,000주를 (액면가 ₩5,000) 주당 ₩6,000에 취득하였다.
2013년 5월 1일: 3월 1일에 취득한 자기주식 500주를 주당 ₩7,000에 처분하였다.
2013년 6월 1일: 3월 1일에 취득한 자기주식 300주를 주당 ₩5,500에 처분하였다.
2013년 7월 1일: 자기주식 100주를 소각하였다.

- ① ₩100,000 ② ₩250,000
③ ₩350,000 ④ ₩450,000

16. (주)전산은 사업개시연도인 2013년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200,000을 보고하였다. 세무상 과세소득은 일시적 차이(손금항목) ₩50,000과 접대비로 인해 재무회계와 세무회계간에 나타나는 차이(익금항목) ₩20,000으로 인하여 ₩170,000이며, 당기 및 차기의 법인세율은 30%이다. 이 경우에 나타나는 이연법인세 금액으로 옳은 것은?

- ① 이연법인세자산 ₩9,000 ② 이연법인세자산 ₩15,000
③ 이연법인세부채 ₩9,000 ④ 이연법인세부채 ₩15,000

17. 2010년 1월 1일에 ₩550,000을 주고 기계를 구입하였는데, 이 기계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50,000으로 추정되었다. 동 기계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13년 1월 1일에 이 기계의 내용연수를 7년(잔존 내용연수 4년)으로, 잔존가치를 ₩10,000으로 다시 추정하였다. 2013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 ① ₩50,000 ② ₩60,000
③ ₩80,000 ④ ₩100,000

18.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영업
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가. 당기순이익	₩300,000	나. 대손상각비	₩10,000
다. 매출채권 증가	₩40,000	라. 재고자산 감소	₩20,000
마. 매입채무 감소	₩10,000	바. 선수금 증가	₩30,000

- ① ₩290,000 ② ₩300,000
③ ₩310,000 ④ ₩320,000

19.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상공의 구매 담당자가 회계연도 말 잠적하였다. 회사는 상품구매시 전액 현금결제하고 있으며, 매출은 모두 외상매출이다. 장부상 당기매입액은 ₩138,000으로 계상 되어 있다. 다음의 자료로 기말재고자산을 추정하면 얼마인가?

가. 기초재고자산	₩50,000
나. 매출채권회전을 (순외상매출액/평균매출채권)	4회
다. 평균매출채권	₩40,000
라. 매출총이익율(매출총이익/매출액)	20%

- ① ₩30,000 ② ₩40,000
③ ₩50,000 ④ ₩60,000

20. 다음의 보고기간 후 사건 중에서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단, 다음의 사건은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 ① 투자자산의 시장가치가 하락한 경우
②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소송사건의 확정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③ 정상적인 매출처가 파산한 경우
④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

〈제2과목〉 원가회계

21.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기회원가는 변동원가로 구성된다.
- ② 기회원가는 장부상 계상되는 원가가 아니다.
- ③ 감가상각이 완료된 설비의 이용시 부가원가가 계산된다.
- ④ 수선부문 종업원의 급여는 가공원가이면서 간접원가이다.

22. 다음 중 직접공임금(생산직)을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기본원가	전환원가	제조원가	기간원가
①	예	예	예	예
②	예	예	예	아니오
③	예	예	아니오	아니오
④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2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단, 재고자산은 없다고 가정한다.

- ① ₩250,000 ② ₩300,000
- ③ ₩360,000 ④ ₩400,000

가. 판매가격 : ₩750,000
 나. 판매이익 : 총원가의 20%
 다. 판매비와 관리비 : 제조원가의 25%
 라. 기초원가 : 제조원가의 80%

24. 원가행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원가추정 시 비정상성 문제(nonstationary problem)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발생주의기준 ② 비효율적인 영업활동
- ③ 제조상 중요한 기술적 변화 ④ 경험과 학습효과

25. (주)대한에 근무하는 나성공씨는 8월 첫째 주 동안 48시간의 작업을 하였다. (주)대한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시간에 대해서 정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있다. (주)대한의 시간당 정상임률은 ₩5,000이다. 나성공씨의 작업시간 중에 기계고장으로 인한 3시간의 유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총노무비 중 간접노무비는 얼마인가?

- ① ₩20,000 ② ₩35,000
- ③ ₩40,000 ④ ₩60,000

26. 다음 제조간접비 배부차이조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제발생액보다 예정배부액이 적은 경우 과소배부된 것이다.
- ② 배부차이조정에는 매출원가조정, 비례배분, 기타손익조정이 있다.
- ③ 매출원가조정법은 비정상적 사건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사용한다.
- ④ 비례배분법은 총원가비례배분과 원가요소별 비례배분법이 있다.

① ₩1,180,000
② ₩1,570,000
③ ₩1,750,000
④ ₩1,810,000

	제조부문		보조부문	
	조립부문	선반부문	동력부문	수선부문
자가 발생액	₩1,500,000	₩1,200,000	₩380,000	₩300,00
동력부분 (KW)	6,000	10,000	-	4,000
수선부문 (횟수)	120	90	90	-

28. (주)동해는 A, B 두 제품을 생산·판매한다. 제조활동은 제조1과 제조2 두 부문에서 이루어진다. 공장에서의 제조간접원가는 공장전체 배부율인 직접노무시간당 ₩17을 기준으로 각 제품에 배부된다. 이 배부율은 예산제조간접원가 ₩340,000과 예산직접 노무원가 20,000시간에 근거하고 있다.

제조부문	예산간접원가	예산직접노무시간
1	₩240,000	10,000
2	₩100,000	10,000
합계	₩340,000	20,000

각 제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직접노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조부문	제품 A	제품 B
1	4	1
2	1	4
합계	5	5

두 제품에 소요되는 직접제조원가의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다.

직접제조원가	제품 A	제품 B
직접재료원가	₩120	₩150
직접노무원가	₩80	₩80

기말재고품은 없으며, 제품 A와 B의 재고는 각각 200개와 600개이다. (주)동해 공장의 예산생산량은 정확히 달성되었다. (주)동해가 공장전체 간접원가배부율을 사용한 경우와 부문별 간접원가배부율을 사용한 경우 제품 A와 B의 제품원가에 포함될 제조간접원가는 전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 ① ₩8,400 ② ₩9,200
③ ₩9,350 ④ ₩9,500

29. (주)대한의 10월 초 재공품원가는 ₩40,000이며, 이는 모두 제조지시서 No.17의 것이다. 10월 중 당기총제조비용은 ₩380,000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제조지시서 No.17을 위한 것이 ₩180,000, No.18을 위한 것이 ₩200,000이다. 제조지시서 No.17의 제품생산량은 500개였으며, 완성제품 중 300개를 판매하였다. 제조지시서 No.18은 10월 말 현재 미완성 상태이다. 10월의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 ① ₩105,000 ② ₩108,000
③ ₩115,000 ④ ₩132,000

30. (주)대한은 개별원가계산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10월 초 재공품원가는 ₩30,000이다. 10월 중 직접재료비는 ₩85,000, 직접 노무비는 ₩40,000, 제조간접비는 ₩35,000이 발생하였다. 10월 중 완성품제조원가는 ₩160,000이다. 회사는 제조간접비로 직접노무비의 40%를 배부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미완성 제조지시서는 No.5이다. 이 제조지시서의 제조간접비가 ₩4,000이라면, 직접재료비는 얼마인가?

- ① ₩13,333 ② ₩15,000
③ ₩16,000 ④ ₩19,333

31. 다음은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서 산출된 공손수량은 다르다.
- ② 선입선출법은 실제의 물량흐름을 잘 반영한다.
- ③ 선행공정의 완성품은 후행공정의 원재료로 간주된다.
- ④ 기초재공품이 없다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완성품화수량은 같다.

32. 평균법을 이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기말재공품 완성도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할 경우, 이 오류가 완성품환산량,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당기완성품원가 그리고 기말재공품원가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완성품환산량		완성품환산량 단위당원가	당기완성품원가	기말재공품원가
①	과대평가	과소평가	과소평가	과대평가
②	과소평가	과대평가	과대평가	과소평가
③	과대평가	과소평가	과대평가	과대평가
④	과소평가	과소평가	과대평가	과대평가

33.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한계율이란 안전하게 매출액을 실제매출액으로 나누어 구한 것이다.
- ② 영업레버리지도는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 ③ 고정비의 비율이 커지면 영업레버리지도는 감소한다.
- ④ 영업레버리지도는 1/안전한계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34. (주)상공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당기에 발생한 고정원가는 ₩3,000이며, 다섯 가지 제품의 매출액기준 구성비율은 3(제품A) : 2(제품B) : 1(제품C) : 3(제품D) : 1(제품E)이다. 세금효과는 무시하고 ₩400의 목표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A	B	C	D	E
단위당 판매가격	₩20	₩10	₩15	₩25	₩30
단위당 변동원가	₩10	₩8	₩12	₩15	₩27

	A	B	C	D	E
단위당 판매가격	₩20	₩10	₩15	₩25	₩30
단위당 변동원가	₩10	₩8	₩12	₩15	₩27

- ① ₩7,000 ② ₩8,000
③ ₩9,000 ④ ₩10,000

35. 전기에 비하여 총고정비와 변동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공헌이익률과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변화하겠는가?

- ① 공헌이익률은 증가하나, 손익분기점은 감소한다.
- ② 공헌이익률은 감소하나, 손익분기점은 증가한다.
- ③ 공헌이익률과 손익분기점은 모두 증가한다.
- ④ 공헌이익률과 손익분기점은 모두 감소한다.

36. 다음은 표준원가계산제도 중 표준직접재료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표준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별로 제품단위당 표준소비 수량과 표준소비가격을 설정하고, 이 양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 ② 표준소비수량은 과학적·통계적 조사에 의하여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재료의 종류, 품질, 가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표준소비수량에는 정상적인 공손 및 감손을 포함한다.
- ③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종류의 재료가 대체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표준직접재료비는 여러 종류 재료 중 하나만을 선정하여 표준소비수량과 표준소비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④ 표준소비가격은 과거 및 현재의 시장가격과 장래에 예측되는 가격동향이나 거래관습 등 제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37. 다음은 표준원가계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합원가계산뿐만 아니라 개별원가계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② 전부원가계산에는 적용가능하나, 변동원가계산에는 적용할 수 없다.
- ③ 원가관리 및 통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④ 장부기입 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으며, 원가차이조정을 통하여 외부보고용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38. 다음은 생산량과 판매량의 차이에 의한 전부원가계산하의 당기손익과 변동원가계산하의 당기손익 차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가. 생산량 > 판매량 : 전부원가계산하의 당기손익이 변동원가계산하의 당기손익보다 적다.
 나. 생산량=판매량 : 전부원가계산하의 당기손익과 변동원가 계산하의 당기손익은 일치한다.
 다. 생산량 < 판매량 : 변동원가계산하의 당기손익이 전부원가 계산하의 당기손익보다 적다.
 라. 전부원가계산하에서는 고정제조간접비가 생산량의 제조회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당기손익의 크기가 매출량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만 판매량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생산량의 크기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마. 변동원가계산하에서는 변동원가만이 생산량의 제조회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당기손익의 크기는 생산량의 크기에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순전히 판매량의 크기에 따라 좌우된다.

- ① 가, 나, 다
- ② 나, 다, 라
- ③ 나, 라, 마
- ④ 가, 나, 다, 라, 마

39. 다음은 (주)대한의 9월 중 제품에 대한 자료이다. 전월과 9월의 제품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가 동일하게 ₩50이었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9월초 제품재고량 : 500개
 나. 9월 제품생산량 : 4,000개
 다. 9월말 제품재고량 : 300개
 라. 9월 제품판매량 : 4,200개

- ① 변동원가계산보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이 ₩10,000 크다.
- ② 변동원가계산보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이 ₩10,000 작다.
- ③ 변동원가계산보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이 ₩15,000 크다.
- ④ 변동원가계산보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이 ₩15,000 작다.

40. 다음 중 원가대상과 원가동인을 잘못 연결한 것은?

- | <u>원가대상</u> | <u>원가동인</u> | <u>원가대상</u> | <u>원가동인</u> |
|-------------|-------------|-------------|-------------|
| ① 제품 | 작업시간 | ② 구매부문 | 구매주문서 |
| ③ 여객수송 | 거리 | ④ 제품설계 | 생산량 |

〈제3과목〉 세무회계

41. 다음 중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 뿐 아니라 경정 청구도 할 수 있다.
- ②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 ③ 수정신고기한은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이다.
- ④ 수정신고는 부과과세제도 세목에 대해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42.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세무공무원이 부동산투기를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④ 세무공무원은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3.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이월결손금이란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②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 ③ 접대비, 임원 퇴직급여의 경우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된다.
- ④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4. 다음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 ① 매출할인은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 ② 위탁매매는 수탁자가 자산을 인도받은 날이 귀속시기이다.
-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중소기업은 결산상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조정을 할 수 있다.
- ④ 시용판매의 경우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이 귀속시기이다.

45. (주)상공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으로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된다. 제 7기 사업연도(2013.1.1~12.31)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임대면적(평)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운용금융수익
주택	60	-	₩100,000,000	₩600,000
점포	140	₩500,000	₩200,000,000	₩2,400,000
합계	200	₩500,000	₩300,000,000	₩3,000,000

건물의 임대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고 부동산 취득가액은 ₩150,000,000(토지가액 ₩90,000,000 포함)이다.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기에금이자율은 4.3%이다. (주)상공이 장부를 기장한 경우와 간주임대료와 추계결정에 의한 경우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단,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장부를 기장한 경우	추계결정에 의한 경우	장부를 기장한 경우	추계결정에 의한 경우
① ₩2,342,500	₩10,900,000	② ₩4,394,000	₩10,900,000
③ ₩4,394,000	₩12,900,000	④ ₩6,342,500	₩12,900,000

46. (주)대한은 제4기(2013.1.1~12.31) 사업연도 중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17,000,000을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제4기의 세무조정은?

가. 회사의 감가상각방법 및 신고내용연수 : 정률법, 10년(상각률 : 0.259)
나. 취득가액 : ₩50,000,000
다. 제4기 사업연도 말 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 : ₩40,000,000
라. 제4기 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한 감가상각비 : ₩15,000,000
마. 제3기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상각부인액 : ₩3,000,000

- | | |
|------------------------|------------------------|
| ① 손금불산입 ₩20,045,000 유보 | ② 손금불산입 ₩20,345,000 유보 |
| ③ 손금불산입 ₩20,645,000 유보 | ④ 손금불산입 ₩20,945,000 유보 |

47. (주)상공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5,000,000
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중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 : ₩2,000,000

- | | |
|--------------|--------------|
| ① ₩2,000,000 | ② ₩3,000,000 |
| ③ ₩5,000,000 | ④ ₩7,000,000 |

48. 다음 중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 (해외 자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가능하다.
- ② 의제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효과를 국내에서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③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법인세액(해외 지점 등의 소득)으로 가산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
- ④ 외국납부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49. 다음은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 ①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등의 경우에 그 소득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그 사업에서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국한하고 있으며, 고정자산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②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이처럼 소득을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분리과세라고 한다.
- ③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 ④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50.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 ① ₩600,000
- ② ₩680,000
- ③ ₩750,000
- ④ ₩800,000

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500,000
나. 국채의 이자와 할인액	₩100,000
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	₩150,000
라. 공익신탁이익	₩80,000

51. 다음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②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④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수령한 대가 ₩1,000
나. 주택임주 지체상금 ₩2,000
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 ₩2,000
라. 물품의 일시적 대여로 인한 소득 ₩3,000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제2회 필기 모의고사 정답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1	④	21	①	41	④
2	③	22	②	42	③
3	③	23	④	43	④
4	②	24	①	44	②
5	①	25	②	45	③
6	④	26	③	46	②
7	②	27	④	47	②
8	③	28	①	48	①
9	②	29	④	49	②
10	①	30	③	50	①
11	①	31	①	51	③
12	②	32	①	52	②
13	④	33	③	53	①
14	①	34	④	54	④
15	③	35	②	55	①
16	④	36	③	56	④
17	②	37	②	57	③
18	③	38	③	58	④
19	④	39	②	59	①
20	①	40	④	60	③

〈제1과목〉 재무회계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은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회계기간 후에는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② 실무에서는 주문 후 아직 인도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한 부채와 같이 동일한 비율로 미이행된 계약상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③ 수익의 인식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 ④ 수익은 발생한 원가와 특정 비용항목의 처리간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풀이) 정답은 ④번이다.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번호 4.47 참조). 비용은 수익과의 관련성이 단지 포괄적 또는 간접적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경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를 기준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번호 4.51 참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015)

부채의 인식

4.46 (생략). 실무에서는 주문 후 아직 인도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한 부채와 같이 동일한 비율로 미이행된 계약상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보기②번)

수익의 인식

4.47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이는 실제로 수익의 인식이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보기③번)

비용의 인식

4.51 경제적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수익과의 관련성이 단지 포괄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경우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를 기준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다. (생략) (보기④번)

4.52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이거나,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더라도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원래 충족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보기①번)

※ 현재 적용되고 있는 K-IFRS_재무보고를_위한_개념체계(2018_개정_2019_타기준서_개정_수정
 목록_20-1_2020_구성양식_변경_반영)은 개정되었으므로 제5장 인식과 제거를 확인바랍니다.

2. 다음 중 회계순환과정의 순서로 올바르게 구성된 것은? 단, 시산표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분개 - 전기 - 재무제표의 작성 - 기말수정분개
- ② 전기 - 분개 - 재무제표의 작성 - 기말수정분개
- ③ 분개 - 전기 - 기말수정분개 - 재무제표의 작성
- ④ 전기 - 분개 - 기말수정분개 - 재무제표의 작성

풀이) 일반적으로 회계순환과정은 회계상 거래의 식별 및 측정 → **분개** → **전기** → 수정전 시산표
 → **결산수정분개** → 수정후 시산표 → 손익계정의 마감 →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 → **재무
 제표 작성**

3. 다음 중 결산시 수정분개처리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10월 1일의 1년분 보험지급액은 ₩120,000이고,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 ① 10월 1일 지급액을 모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차) 보험료 ₩30,000 (대) 선급보험료 ₩30,000”의 분개를 하여야 한다.
- ② 10월 1일 지급액을 모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차) 선급보험료 ₩30,000 (대) 보험료 ₩30,000”의 분개를 하여야 한다.
- ③ 10월 1일 지급액을 모두 자산으로 계상하였다면,
 “(차) 보험료 ₩30,000 (대) 선급보험료 ₩30,000”의 분개를 하여야 한다.
- ④ 10월 1일 지급액을 모두 자산으로 계상하였다면,
 “(차) 선급보험료 ₩90,000 (대) 보험료 ₩90,000”의 분개를 하여야 한다.

풀이) 정답은 ③번이다.

10월 1일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 또는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결산수정분개는 아래와 같으며,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보험료는 ₩30,000,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급보험료는 ₩90,000다.

구 분	보험료 납부액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보험료 납부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10.31.	(차) 보험료 120,000 (대) 현금/예금등 120,000	(차) 선급보험료 120,000 (대) 현금/예금등 120,000
결산시	(차) 선급보험료 90,000 (대) 보험료 90,000	(차) 보험료 30,000 (대) 선급보험료 30,000

4. 다음 중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 ① 퇴직급여부채
- ② **유동성장기부채**
- ③ 만기가 2년 남은 신주인수권부사채
- ④ 2년의 품질보증 기간이 남은 제품에 대한 제품보증충당부채

풀이) ②번 유동성장기부채는 유동부채에 해당하며, ①, ③, ④번은 비유동부채에 해당한다.
이 외 유동부채에는 매입채무와 기타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단기충당부채 등이 있다.

5. 다음은 재무제표의 주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주석으로 제일 먼저 표시하는 것은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 정책의 요약이다.
- ② 주석은 재무제표 작성 근거와 구체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주석에는 기업의 재무위험관리목적 및 정책과 같은 비재무적 공시항목도 포함할 수 있다.
- ④ 주석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풀이) 정답은 ①번이다. (②번~④번은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번호 참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주석 문단번호 112~114

112 주석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 (1) 재무제표 작성 근거와 문단 117~124에 따라 사용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
(보기②번)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이지만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는 정보
- (3)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 (보기④번)

113 주석은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 체계적인 방법을 결정할 때,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 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된 개별 항목은 주석의 관련 정보와 상호 연결시켜 표시한다.

114 주석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집단으로 묶는 예는 다음과 같다.

- (1) 특정한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집단으로 묶는 것과 같이, 기업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의 이해에 가장 목적적합 할 것으로 판단되는 활동 분야를 부각시킨다.
-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같이, 유사하게 측정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집단으로 묶는다.
- (3)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항목 순서를 따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실(문단 16 참조)
 - (나)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문단 117 참조)
 - (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보충정보. 재무제표의 배열 및 각 재무제표에 표시된 개별 항목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 (라) 다음을 포함한 기타 공시
 - ① 우발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와 재무제표에서 인식하지 아니한 계약상 약정사항
 - ② 비재무적 공시항목, 예를 들어 기업의 재무위험관리목적과 정책 (보기③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참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수정목록 14-1반영)

용어의 정의

금융상품의 네가지 범주의 정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 (1)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 (가)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한다.
 - (나) 최초인식시점에,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이다.
 - (다) 파생상품이다(다만,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한다).
- (2)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문단 11A에서 허용하는 경우 또는 지정하는 것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부록 A의 문단 AG16~AG25 참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보기③번)

- (1)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 (2) 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
- (3) 금융자산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보기④번)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다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 금융자산

- (1) 대여금 및 수취채권
- (2) 만기보유금융자산
-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107호 금융상품 공시

재무상태표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의하는 다음의 각 범주별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공시한다.

-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 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된 자산과 (나)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각각 구분 표시한다. (보기①번)

8. 다음 중 오공상사의 2013년 12월 31일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오공상사는 2012년 4월 1일 주권상장법인인 (주)하나산업의 주식 100주를 주당 ₩9,000에 장기보유목적으로 구입하였다. 오공상사의 결산일인 12월 31일 현재 (주)하나산업의 주식의 주당 시가는 2012년 ₩8,500, 2013년 ₩9,700이다.

〈차 변〉	〈대 변〉	
① 매도가능금융자산 ₩12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50,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70,000	
② 매도가능금융자산 ₩120,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20,000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120,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50,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70,000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12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환입 ₩50,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70,000	

풀이) 오공상사의 장기보유목적 지분증권 취득 및 기말평가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2012. 4. 1.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900,000 (대) 현금 / 예금 등 ₩900,000

2012.12.31. (차)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50,000 (대) 매도가능금융자산 ₩50,000
 $\times (\text{₩}8,500 - \text{₩}9,000) \times 100\text{주} = \text{₩}50,000$ 손실

2013.12.31.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120,000 (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50,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70,000

9.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채권 기말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대손상각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60,000
- ② ₩70,000
- ③ ₩80,000
- ④ ₩90,000

가. 당기현금 매출액	₩50,000
나. 매출총이익	₩90,000
다. 기초 매출채권	₩80,000
라. 매출채권 회수액	₩260,000
마. 기초 상품재고	₩120,000
바. 당기상품매입액	₩200,000
사. 기말 상품재고	₩110,000

풀이) 정답은 ②번 ₩70,000이다.

- (1) 당기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text{₩}120,000 + \text{₩}200,000 - \text{₩}110,000) + \text{₩}90,000 = \text{₩}300,000$
- (2) 당기 외상매출액 = 당기 총매출액 - 현금매출액 = $\text{₩}300,000 - \text{₩}50,000 = \text{₩}250,000$
- (3) 기말 매출채권 = (기초 매출채권 + 당기 외상매출액 - 매출채권 회수액)
 $= \text{₩}80,000 + \text{₩}250,000 - \text{₩}260,000 = \text{₩}70,000$

10. 다음 예수금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예수금은 그 성격상 자산에 해당한다.
 ② 부가가치세나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등이 예수금을 발생시키는 항목이다.
 ③ 제3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을 기업이 미리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예수금이 발생한다.
 ④ 종업원이 실제 지급받는 급여는 명목상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예수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풀이) 정답은 ①번. 예수금은 자산이 아닌 부채에 해당한다.

예수금이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으로 미리 받아 둔 금액을 말한다.

즉, 예수금은 부가가치세예수금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세와 같이 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일단 금전을 받아 수취하고 그 후 타인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채무(부채)를 말한다. 국민연금 예수금, 건강보험료 예수금, 근로소득세 예수금, 지방소득세 예수금 등

11. (주)한국은 재고자산에 대한 원가

흐름은 총평균법을 가정하고 있다.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할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2013년 4월의 평균단가는 얼마인가?

① ₩1,300 ② ₩1,500

③ ₩1,600 ④ ₩1,800

		수 량	단 가	금 액
4월 1일	기초재고	20	₩700	₩14,000
4월10일	매 입	40	₩900	₩36,000
4월15일	매 출	50	-	-
4월20일	매 입	70	₩1,700	₩119,000
	기말재고	80		

풀이) 실지재고조사법과 총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2013년 4월의 평균단가는 ①번 @₩1,300이다.

수량결정은 실지재고조사법, 원가흐름의 가정은 총평균법인 경우 평균단가를 계산하면

$$\frac{₩169,000(= ₩14,000 + ₩36,000 + ₩119,000)}{130개(= 20개 + 40개 + 70개)} = @₩1,300$$

12. (주)상공은 2013년 1월 1일에 시작한 본사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출을 하였다. 이 회사는 일반차입금 ₩1,000,000(연이자율 10%, 3년 만기)을 2013년 1월 1일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본사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한 특정차입금 ₩400,000(연이자율 12%, 1년 만기)을 2013년 4월 1일에 차입하여 당해 공사에 지출하였다. 일반차입금의 금융원가 중에서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가. 1월 1일 :	계약금	₩500,000
나. 7월 1일 :	중도금	₩400,000
다. 12월 31일	잔 금	₩200,000

일반차입금의 금융원가 중에서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 ① ₩30,000 ② ₩40,000
 ③ ₩50,000 ④ ₩70,000

풀이) 일반차입금 가운데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는 ②번 ₩40,000이다.

구 분	1월 ~ 3월	4월 ~ 6월	7월 ~ 12월
신축공사대금	500,000	500,000	900,000
일반차입금	500,000	100,000	500,000
특정차입금	0	400,000	400,000

일반차입금 가운데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를 계산하면 ₩40,000^{※1)}이다.

※1) $\{(\text{₩}500,000 \times 10\% \times 3/12) + (\text{₩}100,000 \times 10\% \times 3/12) + (\text{₩}500,000 \times 10\% \times 6/12)\}$

※ 참고: 일반차입금과 특정차입금 가운데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는 ₩76,000이다.

= $500,000 \times 10\% \times 3/12$

+ $100,000 \times 10\% \times 3/12 + 400,000 \times 12\% \times 3/12$

+ $500,000 \times 10\% \times 6/12 + 400,000 \times 12\% \times 6/12 = \text{₩}76,00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033호 차입원가

자본화가능차입원가

12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 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

14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한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 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어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서 생기는 차입원가는 위에서 기술된 자본화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회계 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자본화의 개시

17 차입원가는 자본화 개시일부터 적격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한다. 자본화 개시일은 최초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날이다.

- (1) 적격자산에 대하여 지출한다.
- (2) 차입원가를 발생시킨다.
- (3)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자본화의 중단

20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자본화의 종료

22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24 적격자산의 건설활동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완성하고, 남아있는 부분의 건설활동을 계속 진행 하고 있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사용 가능하다면, 당해 부분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을 완료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13.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개발 중인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한 경우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당기손실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③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차입한 장기차입금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이라면 개발중인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 ④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과 라이선스의 상각비는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풀이) 정답은 ④번이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등에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며, 직접관련된 원가의 예에는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과 라이선스 상각비 등이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번호 66 참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038호 무형자산

개발단계

63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보기②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65 문단 24에 따라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문단 21, 22와 57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한다.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문단 71에 따라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66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 직접 관련된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보기④번)

- (1)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재료원가, 용역원가 등
- (2) 무형자산의 창출을 위하여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정의 참조)
- (3)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 (4)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과 라이선스의 상각비 (보기④번)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자를 인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보기③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023호 차입원가(보기③번)

용어의 정의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차입원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

적격자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7 다음 자산은 경우에 따라 적격자산이 될 수 있다.

- (4) 무형자산

인식

8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9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를 구성한다. 이러한 차입원가는 미래경제적효익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할 경우에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한다.

67 다음 항목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판매비, 관리비 및 기타 일반경비 지출. 다만,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 (2) 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과 초기 영업손실
- (3)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

장부금액의 회수가능성 - 손상차손

111 무형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는 자산의 장부금액의 검토시기와 방법, 자산의 회수가능액의 결정방법과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의 인식시기를 설명하고 있다. (보기㉠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036호 자산손상(보기㉠번)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모든 자산의 손상에 관한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손상되었을 수 있는 자산의 식별

8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14. 다음 중 사채의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 액면금액의 현재가치 + 이자 지급액의 현재가치
- ㉡ 액면금액 + 이자 지급액의 현재가치
- ㉢ 액면금액 + 이자 지급액
- ㉣ 액면금액의 현재가치

풀이) 정답은 ㉠번이다. 사채의 발행가액은 사채의 만기금액(액면금액)의 현재가치에 만기까지의 이자 지급액의 현재가치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15. 2013년 중에 (주)서울은 다음의 자기주식 거래를 하였다. 기말에 자기주식 거래로 인하여 자본에 계상될 자기주식처분이익 증가분은 얼마인가?

2013년3월1일 : 자기주식 1,000주를 (액면가 ₩5,000) 주당 ₩6,000에 취득하였다.
 2013년5월1일 : 3월 1일에 취득한 자기주식 500주를 주당 ₩7,000에 처분하였다.
 2013년6월1일 : 3월 1일에 취득한 자기주식 300주를 주당 ₩5,500에 처분하였다.
 2013년7월1일 : 자기주식 100주를 소각하였다.

- ㉠ ₩100,000
- ㉡ ₩250,000
- ㉢ ₩350,000
- ㉣ ₩450,000

2013.03.01.	(차) 자 기 주 식	6,000,000	(대) 현 금 / 예 금 등	6,000,000
2013.05.01.	(차) 현 금 / 예 금 등	3,500,000	(대) 자 기 주 식	3,000,000
			자기주식처분익	500,000
2013.06.01.	(차) 현 금 / 예 금 등	1,650,000	(대) 자 기 주 식	1,800,00
	자기주식처분익	150,000		
2013.07.01.	(차) 자 본 금	500,000	(대) 자 기 주 식	600,000
	감 자 차 손	100,000		

① 이연법인세자산 ₩9,000 ② 이연법인세자산 ₩15,000
③ 이연법인세부채 ₩9,000 ④ 이연법인세부채 ₩15,000

(2) 차감할 일시적차이: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이 회수나 결제되는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 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시 차감할 금액이 되는 일시적차이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제2회 필기 모의고사 풀이 및 해설 - 29 -

① ₩50,000

② ₩60,000

③ ₩80,000

④ ₩100,000

풀이) 정액법에 의한 2010~2012년 말 감가상각누계액 ((1)+(2)+(3)) = ₩300,000

(1) 2010년 감가상각비 = (550,000 - 50,000) × 1년/5년 = ₩100,000

(2) 2011년 감가상각비 = (550,000 - 50,000) × 1년/5년 = ₩100,000

(3) 2012년 감가상각비 = (550,000 - 50,000) × 1년/5년 = ₩100,000

회계추정 후 정액법에 의한 2013년 말 감가상각비는 ②번 ₩60,000이다.

(1) 2013년 감가상각비 = (550,000 - 300,000 - 10,000) ÷ 4년 = ₩60,000

18.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영업
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가. 당기순이익	₩300,000	나. 대손상각비	₩10,000
다. 매출채권 증가	₩40,000	라. 재고자산 감소	₩20,000
마. 매입채무 감소	₩10,000	바. 선수금 증가	₩30,000

① ₩290,000

② ₩300,000

③ ₩310,000

④ ₩320,000

풀이) 간접법에 의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액을 계산하면 ③번 ₩310,000이다.

간접법에 의해 작성된 현금흐름표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을 차감하여 영업활동에서 조달된 현금을 파악할 수 있다.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	(단위: 원)
영업활동현금흐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00,000
가감: 대손상각비	10,000
	310,00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증가	(40,000)
매입채무의 감소	(10,000)
재고자산의 감소	20,000
선수금의 증가	30,000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310,00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보고

20 간접법을 적용하는 경우,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당기순손익에 다음 항목들의 영향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1)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자산과 영업활동에 관련된 채권·채무의 변동

(2) 감가상각비, 충당부채, 이연법인세, 외화환산손익, 미배분 관계기업 이익 및 미배분 비지배 지분과 같은 비현금항목

대체적인 방법으로,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공시된 수익과 비용, 그리고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자산과 영업활동에 관련된 채권·채무의 변동을 보여줌으로써 간접 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기초재고자산	₩50,000
나. 매출채권회전율	4회
(순의상매출액/평균매출채권)	
다. 평균매출채권	₩40,000
라. 매출총이익율(매출총이익/매출액)	20%

- $$\frac{\text{₩128,000}}{\text{매출원가}} = \frac{\text{₩50,000}}{\text{기초재고자산}} + \frac{\text{₩138,000}}{\text{당기매입액}} - \text{기말재고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 사건

용어의 정의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 (1)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 (2)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8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한다.

9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건의 영향으로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새로 인식하여야 한다.

- (1)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보기②번)**.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이전에 인식하였던 충당부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소송사건의 확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문단 16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므로 단순히 우발부채로 공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 (2) 보고기간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가) 보고기간 후의 매출처 파산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에 고객의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확인해준다. **(보기③번)**
 - (나) 보고기간 후의 재고자산 판매는 보고기간말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 (3)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 (4) 보고기간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나 의 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 (5)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보기④번)**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기①번)**

10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11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로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 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들 수 있다. **(보기①번)** 공정가치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그 투자 자산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문단 21에 따라 추가로 공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보고기간말의 투자자산에 대한 공시 금액을 수정하지는 아니한다.

〈제2과목〉 원가회계

21.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기회원가는 변동원가로 구성된다.
- ② 기회원가는 장부상 계상되는 원가가 아니다.
- ③ 감가상각이 완료된 설비의 이용시 부가원가가 계산된다.
- ④ 수선부문 종업원의 급여는 가공원가이면서 간접원가이다.

풀이) ① 기회원가(opportunity cost)

특정 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포기해야 하는 효익(순현금유입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회원가는 회계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③ 내재원가(부가원가, imputed cost)

자기자본으로 투자한 경우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와 같이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며 회계기록의 대상은 아니나 그 가치의 소비를 인식할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22. 다음 중 직접공임금(생산직)을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기본원가	전환원가	제조원가	기간원가
①	예	예	예	예
②	예	예	예	아니오
③	예	예	아니오	아니오
④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풀이) 정답은 ②번이다. 직접노무비는 기본원가(기초원가,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이면서 가공원가(전환원가,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에 해당한다. 기간원가(period cost)란 제품생산과 관련 없이 발생되기 때문에 항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원가를 말하며, 재고자산의 원가와 무관하므로 재고불능원가라고도 한다. 따라서 생산직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은 기본원가이면서, 전환원가(가공원가)이고, 제조원가에 해당한다.

2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단, 재고자산은 없다고 가정한다.

- ① ₩250,000 ② ₩300,000
- ③ ₩360,000 ④ ₩400,000

가. 판매가격 : ₩750,000
 나. 판매이익 : 총원가의 20%
 다. 판매비와 관리비 : 제조원가의 25%
 라. 기초원가 : 제조원가의 80%

풀이) 정답은 ④번 ₩400,000이다.

- (1) 판매가격(₩750,000) = 총원가 + 판매이익(0.2χ) 따라서 총원가는 ₩625,000이다.
- (2) 총원가(₩625,000) = 제조원가(χ) + 판매비와관리비(0.25χ)
따라서 제조원가(χ)는 ₩500,000
- (3) 기초원가(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는 제조원가(₩500,000)의 80%이므로 ₩400,000이다.

(1) 판매가격(₩750,000) - 제조원가(χ) - 판매비와 관리비(0.25χ) = 판매이익(0.25χ)^{※1)}

※1) 판매이익은 총원가의 20%이므로 (제조원가 χ + 판매비와 관리비 $(0.25\chi) \times 20\%$

(2) 따라서 제조원가(χ)는 ₩500,000, 기초원가는 제조원가의 80%이므로 ₩400,000이다.

24. 원가행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원가추정 시 비정상성 문제(nonstationary problem)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발생주의기준 ② 비효율적인 영업활동
③ 제조상 중요한 기술적 변화 ④ 경험과 학습효과

풀이) ① 발생주의기준은 수익과 비용의 회계인식기준을 말하며, 원가추정시 비정상성과는 무관하다. 발생기준 회계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을, 비록 그 결과로 발생하는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다른 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영향이 발생한 기간에 보여준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그리고 기간 중 그 변동에 관한 정보는 그 기간 동안의 현금 수취와 지급만의 정보보다 기업의 과거 및 미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더 나은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참고: 학습효과(learning effects)란 종업원들의 경험축적이나 학습, 생산설비의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누적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누적평균단위원가 또는 누적평균단위시간이 체계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다. 학습효과는 일반적으로 누적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든다.

25. (주)대한에 근무하는 나성공씨는 8월 첫째 주 동안 48시간의 작업을 하였다. (주)대한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시간에 대해서 정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있다. (주)대한의 시간당 정상 임률은 ₩5,000이다. 나성공씨의 작업시간 중에 기계고장으로 인한 3시간의 유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총노무비 중 간접노무비는 얼마인가?

- ① ₩20,000 ② ₩35,000
③ ₩40,000 ④ ₩60,000

풀이) 간접노무비는 ② ₩35,000이다.

(1) 총노무비 = 40시간(정상근로시간)×₩5,000 + 8시간(초과근로시간)×₩5,000×1.5
= ₩260,000

(2) 직접노무비 = 45시간^{※1)} (실제작업시간) × ₩5,000 (정상임률) = ₩225,000

※1) 실제작업시간은 총작업시간(48시간)에서 유희시간(3시간)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3) 간접노무비 = (1)-(2) = ₩35,000

26. 다음 제조간접비 배부차이조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제발생액보다 예정배부액이 적은 경우 과소배부된 것이다.
- ② 배부차이조정에는 매출원가조정, 비례배분, 기타손익조정이 있다.
- ③ 매출원가조정법은 비정상적 사건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사용한다.
- ④ 비례배분법은 총원가비례배분과 원가요소별 비례배분법이 있다

풀이) ③ 배부차이가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여 원가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손익법을 사용한다.

제조간접비 배부차이

실제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를 실제배부율을 기준으로 배부하므로 실제발생액만큼 배부되는 반면, 정상원가계산에서는 예정배부율을 이용하므로 실제발생액과 예정배부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배부차이라 한다.

배부차이 유형

배부차이는 과소배부(부족배부)와 과대배부(초과배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소배부는 실제발생액에 비해 예정배부액이 적을 경우(실제발생액 > 예정배부액) 발생하며, 기말 재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게 된다. (보기①번)

과대배부는 실제발생액보다 예정배부액이 클 경우(실제발생액 < 예정배부액) 발생하며, 기말 재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간접비가 실제발생액보다 많이 계상된 상태를 의미한다.

배부차이 조정

예정배부액으로 기록된 재고자산(기말재공품, 기말제품)과 매출원가에서 배부차이를 조정할 때는 과소배부는 가산하고(불리한 차이), 과대배부는 차감하여야 한다(유리한 차이). 배부차이 조정방법에는 매출원가조정법, 비례배분법(총원가기준법 · 원가요소법), 기타손익법, 이연법이 있다. (보기②번)

(1) 매출원가조정법

배부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과소배부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과대배부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배부차이를 모두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므로 재공품과 제품의 제조간접비는 계속 예정배부액으로 기록된다.

매출원가조정법은 배부차이가 적거나, 기말 재고자산금액이 매출원가에 비해 매우 적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2) 비례배분법

배부차이를 재공품, 제품,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배부차이가 크고, 중요한 경우 사용된다. 비례배분법에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배부차이를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총원가기준법과 원가요소법이 있다. (보기④번)

① 총원가기준법

배부차이를 총원가(기말잔액) 비율에 따라 재공품, 제품,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방법이다. 총원가를 기준으로 배부차이를 조정하면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했을 때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② 원가요소법

배부차이를 재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간접비 비율에 따라 조정하는 방법으로, 제조간접비와 총원가의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 유용하며, 원가요소법을 적용하면 처음부터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기타손익법

배부차이가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여 원가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되는 방법으로, 과소배부는 기타비용으로, 과대배부는 기타수익으로 처리한다. (보기③번)

(4) 이연법

배부차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월차결산에서 이용되며, 기말이 되면 배부차이의 순액이 0이 되어 소멸된다는 관점에서 기말까지 이연시킨다.

27. (주)상공은 2개의 제조부문과 2개의 보조부문이 있다. 각 부문에서 당기 중에 발생한 원가와 보조부문이 제공한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상호배부법에 의할 경우 조립부문의 제조부문비 합계액은 얼마인가?

- ① ₩1,180,000
 ② ₩1,570,000
 ③ ₩1,750,000
 ④ ₩1,810,000

	제조부문		보조부문	
	조립부문	선반부문	동력부문	수선부문
자가 발생액	₩1,500,000	₩1,200,000	₩380,000	₩300,000
동력부분(KW)	6,000	10,000	-	4,000
수선부분(회수)	120	90	90	-

풀이) 상호배분법에 의한 원가배부방법

- (1) 1단계 :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관계를 고려하여 연립방정식으로 원가 계산
 동력부문 = ₩380,000 + 수선부문 × 0.3(90회 ÷ 300회)
 수선부문 = ₩300,000 + 동력부문 × 0.2(4,000KW ÷ 20,000KW)
 연립방정식을 풀면 동력부문 원가는 ₩500,000, 수선부문 원가는 ₩400,000이다.
- (2) 2단계 : 보조부문의 원가를 용역제공비율에 따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
 조립부문의 제조부문비 합계액 = ₩1,500,000 + ₩500,000 × 0.3^{※1)} + ₩400,000 × 0.4^{※2)}
 ※1) 조립부문의 동력부문 용역수수비율 = 6,000KW ÷ 20,000KW = 30%
 ※2) 조립부문의 수선부문 용역수수비율 = 120회 ÷ 300회 = 40%
 (3) 따라서 조립부문의 제조부문비 합계액은 ④번 ₩1,810,000이다.

28. (주)동해는 A, B 두 제품을 생산·판매한다. 제조활동은 제조1과 제조2 두 부문에서 이루어진다. 공장에서의 제조간접원가는 공장전체 배부율인 직접노무시간당 ₩17을 기준으로 각 제품에 배부된다. 이 배부율은 예산제조간접원가 ₩340,000과 예산직접 노무원가 20,000시간에 근거하고 있다.

제조부문	예산간접원가	예산직접노무시간
1	₩240,000	10,000
2	₩100,000	10,000
합계	₩340,000	20,000

각 제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직접노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조부문	제품 A	제품 B
1	4	1
2	1	4
합계	5	5

두 제품에 소요되는 직접제조원가의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다.

직접제조원가	제품 A	제품 B
직접재료원가	₩120	₩150
직접노무원가	₩80	₩80

기말재공품은 없으며, 제품 A와 B의 재고는 각각 200개와 600개이다. (주)동해 공장의 예산생산량은 정확히 달성되었다. (주)동해가 공장전체 간접원가 배부율을 사용한 경우와 부문별 간접원가 배부율을 사용한 경우 제품 A와 B의 제품원가에 포함될 제조간접원가는 전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① ₩8,400

② ₩9,200

③ ₩9,350

④ ₩9,500

풀이) (1) 공장전체 간접원가 배부율을 사용한 경우 제조간접비 = ₩ 68,000

(200개 × 5시간 × ₩17 + 600개 × 5시간 × ₩17)

(2) 부문별 간접원가 배부율을 사용한 경우 제조간접비 = ₩59,600

제조1의 제조간접비 배부율 = ₩240,000 ÷ 10,000직접노무시간 = ₩24/직접노무시간

제조2의 제조간접비 배부율 = ₩100,000 ÷ 10,000직접노무시간 = ₩10/직접노무시간

200개 × (₩24×4시간 + ₩10×1시간) + 600개 × (₩24×1시간 + ₩10×4시간)

(3) 따라서 제품 A와 B의 제품원가에 포함될 제조간접원가의 차이((1)-(2))는 ①번 ₩8,400이다.

29. (주)대한의 10월 초 재공품원가는 ₩40,000이며, 이는 모두 제조지시서 No.17의 것이다. 10월 중 당기총제조비용은 ₩380,000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제조지시서 No.17을 위한 것이 ₩180,000, No.18을 위한 것이 ₩200,000이다. 제조지시서 No.17의 제품생산량은 500개였으며, 완성제품 중 300개를 판매하였다. 제조지시서 No.18은 10월 말 현재 미완성 상태이다. 10월의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① ₩105,000

② ₩108,000

③ ₩115,000

④ ₩132,000

풀이) 10월의 매출원가는 제품이 완성된 제조지시서 No.17과 관련된 것이다. (제조지시서 No.18은 10월 말 현재 미완성 상태이므로 판매가능상태가 아니며, 매출원가가 발생할 수 없다.)

제조지시서 No.17의 제조원가는 ₩220,000^{※1)}이며, 매출원가는 ④번 ₩132,000^{※2)}이다.

※1) 제조원가 = ₩40,000(기초 재공품원가) + ₩180,000(당기총제조비용) = ₩220,000

※2) 매출원가 = ₩220,000(제조원가) × {300개(판매수량)÷500개(완성제품수량)}

30. (주)대한은 개별원가계산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10월 초 재공품원가는 ₩30,000이다. 10월 중 직접재료비는 ₩85,000, 직접 노무비는 ₩40,000, 제조간접비는 ₩35,000이 발생하였다. 10월 중 완성품제조원가는 ₩160,000이다. 회사는 제조간접비로 직접노무비의 40%를 배부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미완성 제조지시서는 No.5이다. 이 제조지시서의 제조간접비가 ₩4,000이라면, 직접재료비는 얼마인가?

① ₩13,333

② ₩15,000

③ ₩16,000

④ ₩19,333

풀이) 10월 기말재공품원가는 ₩30,000^{※1)}이며, 이는 제조지시서 No.5에 해당한다.

※1) ₩30,000(기초재공품) + 당기총제조원가(₩85,000 + ₩40,000 + 35,000) - 기말재공품(χ)
= ₩160,000(완성품제조원가), 따라서 기말재공품(χ)은 ₩30,000이 된다.

제조지시서 No.5(기말재공품원가)의 제조간접비가 ₩4,000이라면 직접노무비는 ₩10,000
(= ₩4,000÷40%)이 되고, 직접재료비는 ③번 ₩16,000(= ₩30,000 - ₩10,000 - ₩4,000)이 된다.

31. 다음은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서 산출된 공손수량은 다르다.
- ② 선입선출법은 실제의 물량흐름을 잘 반영한다.
- ③ 선행공정의 완제품은 후행공정의 원재료로 간주된다.
- ④ 기초재공품이 없다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완제품환산량은 같다.

풀이) 정답은 ①이다. 제품원가계산을 할 때는 먼저 수량을 파악한 후 원가흐름의 가정에 따라 원가를 배부하기 때문에 평균법을 적용하나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나 정상공손수량과 비정상공손수량은 동일하게 계산된다.

즉, 원가흐름의 가정(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기 전 단계에서 수량(공손 수량 포함)을 파악하기 때문에 원가흐름의 가정을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와 무관하게 정상공손수량과 비정상공손수량이 결정된다.

32. 평균법을 이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기말재공품 완성도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할 경우, 이 오류가 완제품환산량, 완제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당기완성품원가 그리고 기말재공품 원가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완제품환산량	완제품환산량 단위당원가	당기완성품원가	기말재공품원가
①	과대평가	과소평가	과소평가	과대평가
②	과소평가	과대평가	과대평가	과소평가
③	과대평가	과소평가	과대평가	과대평가
④	과소평가	과소평가	과대평가	과대평가

풀이)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한 경우 정답은 ①번이다.

(1) 완제품환산량이란 일정기간 완제품만을 생산하는데 투입했더라면 완성되었을 완제품의 수량으로 나타낸 수치로, 투입 물량(수량)에 완성도를 곱하여 계산(투입량 × 완성도)되므로 완성도를 과대평가한 경우 완제품환산량도 과대평가된다.

(2) 완제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배부대상원가를 완제품환산량으로 나누어 계산(배부대상원가 ÷ 완제품환산량)되므로, 완성도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한 경우 완제품환산량(분모)이 과대평가되어 “완제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과소평가된다.

(3) 당기완성품원가는 완제품수량에 완제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계산(완제품수량 × 완제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되며, 완성도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한 경우 완제품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과소평가되어 당기완성품원가 역시 과소평가된다.

33.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한계율이란 안전한계 매출액을 실제매출액으로 나누어 구한 것이다.
- ② 영업레버리지도는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 ③ 고정비의 비율이 커지면 영업레버리지도는 감소한다.
- ④ 영업레버리지도는 1/안전한계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1) \text{ 변동비율} = \frac{\text{변동원가}}{\text{매출액}}, \text{ 공헌이익률} = \frac{\text{공헌이익}(\text{매출액} - \text{변동원가})}{\text{매출액}}$$

$$(2) \text{ 변동비율} + \text{공헌이익률} = \frac{\text{변동원가}}{\text{매출액}} + \frac{\text{공헌이익}(\text{매출액} - \text{변동원가})}{\text{매출액}} = 1$$

따라서 변동비율이 증가하면 공헌이익률은 감소한다.

$$(3) \text{ 손익분기점 매출액} = \frac{\text{고정원가}}{\text{공헌이익률}}$$

따라서 총고정비가 증가하고, 공헌이익률이 감소(하락)하면 손익분기점(매출액)은 증가한다.

36. 다음은 표준원가계산제도 중 표준직접재료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표준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별로 제품단위당 표준소비 수량과 표준소비가격을 설정하고, 이 양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 ② 표준소비수량은 과학적·통계적 조사에 의하여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재료의 종류, 품질, 가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표준소비수량에는 정상적인 공손 및 감손을 포함한다.
- ③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종류의 재료가 대체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표준직접재료비는 여러 종류 재료 중 하나만을 선정하여 표준소비수량과 표준소비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④ 표준소비가격은 과거 및 현재의 시장가격과 장래에 예측되는 가격동향이나 거래관습 등 제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풀이) ③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종류의 재료가 대체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표준직접재료비는 재료종류별로 표준소비수량과 표준소비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 표준직접재료비는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된 제품단위당 직접재료 표준수량에 직접재료 단위당 표준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 제품단위당 직접재료 표준수량은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해야 하는 직접재료 수량을 의미하며, 공손·감손·증발·작업폐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직접재료 단위당 표준가격은 직접재료 1단위의 표준구입가격을 의미하며, 시장의 가격동향,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37. 다음은 표준원가계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합원가계산뿐만 아니라 개별원가계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② 전부원가계산에는 적용가능하나, 변동원가계산에는 적용할 수 없다.
- ③ 원가관리 및 통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④ 장부기입 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으며, 원가차이조정을 통하여 외부보고용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풀이) ② 표준원가계산제도는 전부원가계산뿐만 아니라 변동원가계산, 초변동원가계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이익차이 조정

전부원가계산에 따른 이익 - 변동원가계산에 따른 이익

= 기말제품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비 - 기초제품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비

= (기말제품재고량 - 기초제품재고량)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

= (생산량 - 판매량)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

= 재고자산 증감수량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

40. 다음 중 원가대상과 원가동인을 잘못 연결한 것은?

원가대상	원가동인	원가대상	원가동인
① 제 품	작업시간	② 구매부문	구매주문서
③ 여객수송	거 리	④ 제품설계	생 산 량

풀이) ④ 제품설계는 제품유지활동의 일환으로 원가동인으로는 제품의 수 등이 타당하다.

생산량과 관련된 단위수준활동은 제품 한 단위가 생산될 때마다 수행되는 생산량에 비례하는 활동으로 이와 관련된 원가대상에는 제품조립, 절삭, 품질검사, 기계작업 등이 있다.

〈제3과목〉 세무회계

41. 다음 중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 뿐 아니라 경정 청구도 할 수 있다.
- ②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 ③ 수정신고기한은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이다.
- ④ 수정신고는 부과과세제도 세목에 대해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풀이) ④ 수정신고는 신고의무가 있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여 신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때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보기①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보기③번)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원천징수 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보기①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생략)

③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기②번)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42.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세무공무원이 부동산투기를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④ 세무공무원은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풀이) ③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호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31.>
-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있다.) (보기①번)
 -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기①번)
 -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 4.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6.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기③번)

국세기본법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보기③번)

법 제81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보기③번)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보기④번)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보기④번)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보기②번)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보기②번)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43.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이월결손금이란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②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 ③ 접대비, 임원 퇴직급여의 경우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된다.
- ④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풀이) ④ 기한을 경과하여 재고자산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5항 참조)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보기①번)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참고: 2021년 세법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보기①번)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 ⑤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보기④번)

44. 다음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 ① 매출할인은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② 위탁매매는 수탁자가 자산을 인도받은 날이 귀속시기이다.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중소기업은 결산상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조정을 할 수 있다.
 ④ 시용판매의 경우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이 귀속시기이다.

풀이) ② 위탁매매의 손익 귀속시기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4호 참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①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보기④번)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보기②번)
-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기③번)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보기①번)

45. (주)상공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으로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된다. 제 7기 사업연도(2013.1.1~12.31)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임대면적(평)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운용금융수익
주택	60	-	₩100,000,000	₩600,000
점포	140	₩500,000	₩200,000,000	₩2,400,000
합계	200	₩500,000	₩300,000,000	₩3,000,000

건물의 임대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고 부동산 취득가액은 ₩150,000,000(토지가액 ₩90,000,000 포함)이다.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기에금이자율은 4.3%이다. (주)상공이 장부를 기장한 경우와 간주임대료와 추계결정에 의한 경우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단,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장부를 기장한 경우 추계결정에 의한 경우 장부를 기장한 경우 추계결정에 의한 경우

① ₩2,342,500 ₩10,900,000 ② ₩4,394,000 ₩10,900,000

③ ₩4,394,000 ₩12,900,000 ④ ₩6,342,500 ₩12,900,000

풀이) 장부를 기장한 경우 간주임대료는 ₩4,394,000, 추계결정에 의한 경우 간주임대료는 ₩12,900,000으로 정답은 ③번이다.

(1) 장부를 기장한 경우 간주임대료

$$= (\text{임대보증금 적수} - \text{건설비 적수}) \times 1/365 \times \text{정기에금이자율} - \text{임대보증금 운용금융수익}$$

$$= (200,000,000 \times 365 - 60,000,000 \times 365 \times 140/200) \times 1/365 \times 4.3\% - 2,400,000$$

$$= 4,394,000$$

(2) 추계결정에 의한 경우 간주임대료

$$= 300,000,000 \times 365 \times 1/365 \times 4.3\%$$

$$= 12,900,000$$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장부를 기장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조특령 제132조)	추계결정에 의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주택의 임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이 아님 ·건설비는 건축물의 취득원가를 의미함 (토지의 취득원가는 제외) ·건축물의 취득원가를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주택 해당 부분은 제외 ·임대보증금 운용금융수익에서 주택임대부분 금융수익은 제외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도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 해당함 ·건설비 및 임대보증금 운용금융수익도 차감하지 않는 것임

46. (주)대한은 제4기(2013.1.1~12.31) 사업연도 중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17,000,000을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제4기의 세무조정은?

- 가. 회사의 감가상각방법 및 신고내용연수 : 정률법, 10년(상각률 : 0.259)
 나. 취득가액 : ₩50,000,000
 다. 제4기 사업연도 말 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 : ₩40,000,000
 라. 제4기 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한 감가상각비 : ₩15,000,000
 마. 제3기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상각부인액 : ₩3,000,000

- ① 손금불산입 ₩20,045,000 유보 ② 손금불산입 ₩20,345,000 유보
 ③ 손금불산입 ₩20,645,000 유보 ④ 손금불산입 ₩20,945,000 유보

풀이) (주)대한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은 ②번 손금불산입 ₩20,345,000 유보이다.

(1) 감가상각비 시부인 대상 금액

$$= \text{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text{즉시상각의제액} = 15,000,000 + 17,000,000 \\ = 32,000,000$$

(2) 상각범위액

$$= (\text{미상각잔액} + \text{즉시상각의제액}) \times \text{상각률} \\ = (\text{취득원가} - \text{장부상 기초 감가상각누계액}^{※1}) + \text{상각부인액} + \text{즉시상각의제액}) \times \text{상각률} \\ = (50,000,000 - 25,000,000 + 3,000,000 + 17,000,000) \times \text{상각률} \\ = 45,000,000 \times 0.259 \\ = 11,655,000$$

$$※ 1) \text{장부상 기초 감가상각누계액} = \text{장부상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text{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 40,000,000 - 15,000,000 = 25,000,000$$

(3)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한도미달액)

$$= \text{시부인 대상 감가상각비} - \text{상각범위액} = 32,000,000 - 11,665,000 = 20,345,000$$

(4) 세무조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345,000 손금불산입 유보

47. (주)상공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5,000,000

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중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 : ₩2,000,000

- ① ₩2,000,000 ② ₩3,000,000
 ③ ₩5,000,000 ④ ₩7,000,000

풀이) (주)상공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②번 ₩3,000,000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5,000,000 - 0 - ₩2,000,000 - 0 = ₩3,000,000

48. 다음 중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해외 자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가능하다.
 ② 의제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효과를 국내에서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법인세액(해외 지점 등의 소득)으로 가산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
 ④ 외국납부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풀이) ①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보기④번)

※ 2021년 현행법령

-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⑤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보기①번)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보기③번)

- ⑨ 법 제5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보기①번)

49. 다음은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 ①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등의 경우에 그 소득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그 사업에서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국한하고 있으며, 고정자산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②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이처럼 소득을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분리과세라고 한다.
- ③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 ④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풀이) ②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이처럼 소득을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분류과세라고 한다.

※ 참고: 보기 ①번과 관련하여

2021년 현행 소득세법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2021년 세법)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50.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 ① ₩600,000
- ② ₩680,000
- ③ ₩750,000
- ④ ₩800,000

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500,000
나. 국채의 이자와 할인액	₩100,000
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	₩150,000
라. 공익신탁이익	₩80,000

풀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이자소득 해당 금액은 가. 비영업대금의 이익(₩500,000)과 나. 국채의 이자와 할인액(₩100,000)의 합계인 ①번 ₩600,000이다.

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라. 공익신탁이익은 “비과세 이자소득”이다.(소득세법 제12조 제1호)

51. 다음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②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고가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④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풀이) ③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보기①번)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보기③번)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보기②번)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농가부업소득
- 라.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보기④번)
- ⑤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2. 다음의 자료를 통해 필요경비를 산출하면 얼마인가? 모든 금액은 일시적 성격으로서 기타소득의 정의를 충족한다. 단, 증빙으로 입증되는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수령한 대가 ₩1,000
- 나. 주택임주 지체상금 ₩2,000
- 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 ₩2,000
- 라. 물품의 일시적 대여로 인한 소득 ₩3,000

- ① ₩400
- ② ₩2,400
- ③ ₩4,000
- ④ ₩6,400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가)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나)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2014. 12. 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다)

※ 봉사료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이 아닌 봉사료 원천징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54. 다음은 복식부기자인 개인사업자 박대한씨의 2013년 귀속 사업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2013년 귀속분 추계결정에 따른 비교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박대한씨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라고 가정한다.

총수입금액 ₩100,000,000

〈주요경비명세〉

가. 원재료매입비용 ₩35,000,000

나. 건물임차료 ₩19,000,000

다. 종업원급여 ₩17,000,000

라. 단순경비율 및 적용배율 85% 및 3배

〈추가정보〉

박대한씨의 추계결정에 따른 기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12%)을 감안하여 ₩17,000,000으로 산출되었다.

① ₩0

② ₩22,000,000

③ ₩23,000,000

④ ₩45,000,000

풀이) 2013년 귀속분 추계결정에 따른 비교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정답은 ④ ₩45,000,000이다.

(1) 추계결정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17,000,000^{※1)}

※1) ₩100,000,000(총수입금액) - ₩71,000,000(주요경비) - ₩12,000,000(기준경비)^{※2)}

※2) ₩100,000,000(총수입금액) - ₩100,000,000 × 12%(기준경비율)

(2) 비교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100,000,000 - 100,000,000 \times 85\%) \times 3배$$

$$= 45,000,000$$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4)을 말한다.

※참고: 2021년 현재는 3.4(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2.8)을 적용

5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 ①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② 부모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③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④ 담보목적으로 부동산의 권리를 인도하는 경우

풀이) ①번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는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로써 재화의 공급에 해당(부가가치세법 제9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보기①번)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보기①번)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보기④번)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보기④번)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보기②번)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보기③번)

56. 다음 중 공제될 수 있는 매입세액은?

- ①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한 물품의 매입세액
- ② 토지의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
- ③ 과세사업자에게 영수증을 수취하고 원재료로 가공하기 위하여 구입한 면세 수산물 관련 매입세액
- ④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폐자원의 재활용관련 매입세액

풀이) 정답은 ④번이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보기①번)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보기③번) (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보기②번)
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57. 일반과세사업자 A는 2013년 8월 1일에 토지와 건물을 90,000,000원에 일괄매매하고 대금을 인도시에 전액 수령했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하고 매매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다. 2013년 9월 1일의 감정평가액은 토지 5,600만원, 건물 4,000만원이고 2013년 8월 1일 현재 기준시가는 토지 4,700만원, 건물 3,000만원이다. 위 거래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 | |
|---------------|---------------|
| ① ₩33,750,000 | ② ₩35,064,930 |
| ③ ₩36,000,000 | ④ ₩37,500,000 |

풀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③번 ₩36,000,000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건물의 공급가액)

$$\begin{aligned}
 &= \text{총공급대가} \times \{ \text{건물 감정평가액} \div (\text{토지 감정평가액} + \text{건물 감정평가액} + \text{건물 감정평가액} \times 10\%) \} \\
 &= ₩90,000,000 \times \{ ₩40,000,000 \div (₩56,000,000 + ₩40,000,000 + ₩4,000,000) \} \\
 &= ₩90,000,000 \times (₩40,000,000 \div ₩100,000,000) = ₩36,000,000
 \end{aligned}$$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58. 다음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역의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 ② 종업원이 법인소유의 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하며 법인카드로 주유를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한 경우의 매입세액
- ③ 거래처에 식사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의 매입세액
- ④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쌀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한 경우의 의제매입세액**

풀이) 정답은 ④번.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①번 ~ ③번은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임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3. 삭제
 -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보기②번)**
 - 6. 점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보기③번)**
 -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보기①번)** (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보기④번)

-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보기④번)

-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9. 다음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수출하는 재화 등과 같은 모든 영세율 적용대상거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 ② 택시운송이나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 ③ 사업자(목욕, 이발, 미용업 등이 아닌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④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의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풀이) 정답은 ①번이다.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가운데 수출하는 재화(부가가치세법 제21조),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에서 제외된다. (발급대상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보기④번)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보기③번)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보기②번)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4. 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

한다) (보기①번),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②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 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를 말한다. (보기③번)

60. 다음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① 매출세액	공급가액 × 세율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세율
② 의제매입세액공제	있음	있음
③ 납부의무면제	있음	있음
④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없음

풀이) 정답은 ③번이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발행면제 외에는 의무적으로 발행	발행할 수 없음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외에는 전액 공제	공제가능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점업, 제조업
납부의무면제	없음	1과세기간 1,200만원 미만
환급	있음	없음
포기제도	없음	있음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신고)

※ 간이과세자 기준 비교요건 (2015년 세법 vs. 2021년 세법)

구 분	2015년	2021년
공급대가	직전연도 4,800만원	직전연도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 2천400만원 미만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모의고사

제2회 모의고사 문제 및 풀이 해설서

(비매품)

- ※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모의고사의 저작권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에 있습니다.
본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의 허가를 받아 제작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이용 및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 보다 자세한 자격시험 정보가 필요하시면 “더존지식서비스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DOUZONE

